

의안번호	2214170
의 퇴 인	신성범 의원
회 답 일	2025. 12. 17.
추 계 번호	25B606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1조제1항 제1호(국유림의 대부등)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음. 다만,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음(제1항)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를 포함한다)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재량규정

II.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1조제1항제1호 (국유림의 대부등)	• 제3호 - (수입감소)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국유림¹⁾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이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제16조(국유림의 구분) ①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보전국유림

- 가.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나. 사적(史蹟)·성지(城趾)·기념물·유형문화유산 보호, 생태계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다. 그 밖에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

2. 준보전국유림: 보전국유림 외의 국유림

[표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현황

(단위: 건, ha)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공용	986	13,149	341	8,463	848	11,438	1,028	11,561	1,096	11,528
공공용	2,833	3,281	3,642	8,587	3,398	5,588	3,380	5,505	3,536	5,566
합계	3,819	16,430	3,983	17,050	4,246	17,026	4,408	17,066	4,632	17,094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 개정안은 보전국유림 허가 사유 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주체에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도 포함되도록 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단체가 사용하는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수입감소가 예상됨

-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보전국유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²⁾하고 있음

[표 2] 최근 5년간 대부료·사용료 징수 현황: 2020~2024년

(단위: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징수액	18,741	14,664	15,731	17,603	17,080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2) 제23조(대부료 등) ① 산림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부등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등의 기간 동안의 대부료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대부등을 받은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개정안에 따른 수입감소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가 허가받아 사용할 보전국유림의 종류·규모와 그로부터 예상되는 사용료·감면비율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는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의 수요·규모, 예상 사용료·감면액의 예측이 곤란하여 합리적인 수입감소 규모 추계에 한계가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one@assembly.go.kr